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78 발의연월일: 2020. 7. 29.

발 의 자:정성호·김정호·김경협

박용진 • 백혜런 • 윤후덕

박 정ㆍ윤관석ㆍ김영주

최혜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후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등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경기도의 경우 그 인구가 2003년에 서울특별시의 인구를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2014년에는 지역내총생산(GRDP) 또한 서울특별시의 지역내총생산을 추월하는 등 그 행정수요가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의 보조기관 정수에 관한 규정 외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의 행정·재정운영에 대하여는 관계 법률로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기도의 행정수요 증 가 및 다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 법령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 부시장은 정무직 국가공무원과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고, 그 밖에 광역시·특별자치시의 부시장과 도·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별정직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관리관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기도의 인구와 지역내총생산(GRDP)은 서울특별시에 비견할 수준이어서, 경기도 부지사를 비롯한 인구 800만 이상인 광역시의부시장 및 인구 800만 이상인 도의 부지사 역시 서울특별시 부시장과같이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보조하는 기관으로 보아야 할 것임.

이에 이 법에 특별시와 인구 800만 이상인 광역시의 부시장 및 인구 800만 이상인 도의 부지사는 정무직 국가공무원과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여야 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10조, 제174조, 제175조).

법률 제 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1항제1호 중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3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명(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는 3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2명(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는 3명)"으로 하며, 같은 조제2항 본문 중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특별시와 인구 800만 이상인 광역시의 부시장 및 인구 800만 이상인 도의 부지사는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단서 중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을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특별시와 인구 800만 이상인 광역시의 부시장 및 인구 800만 이상인 이상인 장역시의 부시장 및 인구 800만 이상인 도의 부지사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17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의 행정·재정운영에 대하여는 그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제175조 중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시·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시와 인구 800만 이상인 광역시의 부시장 및 인구 800만 이상인 도의 부지사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이후 특별시와 인구 800만 이상인 광역시의 부시장 또는 인구 800만 이상인 도의 부지사를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0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	제110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
구청장) ① 특별시·광역시 및	구청장) ①
특별자치시에 부시장, 도와 특	
별자치도에 부지사, 시에 부시	
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	
구청장을 두며, 그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시의 부시장의 정수 : <u>3</u>	1
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3명</u>
2. 광역시와 특별자치시의 부시	2
장 및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	
지사의 정수 : <u>2명(인구 800</u>	<u>2명</u>
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는 3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	<u>도는 3명)</u>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	②
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	
의 부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u>정무직 또는</u>	<u>정무직 또는</u>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일반직 국가공무원(특별시와
다만,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	인구 800만 이상인 광역시의

라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 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경우에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보하되,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보한되,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보한 때의 자격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 략) 제174조(특례의 인정) ①·② (생 략)

<신 설>

부시장 및 인구 800만 이상인
도의 부지사는 정무직 국가공
무원)
<u>정무직·</u> 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특별시와
인구 800만 이상인 광역시의
부시장 및 인구 800만 이상인
도의 부지사는 정무직 지방공
무원)
③ ~ ⑥ (현행과 같음)
しているり (1) (1) (1) (1) (1) (1) (1) (1) (1) (1)
세174조(특례의 인정) ①·② (현
에174조(특례의 인정) ①·② (현
세174조(특례의 인정) ①·② (현 행과 같음)
제174조(특례의 인정)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
세174조(특례의 인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의 행정·재정운영에 대하
세174조(특례의 인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의 행정·재정운영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제174조(특례의 인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 나 도의 행정·재정운영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
제174조(특례의 인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 나 도의 행정·재정운영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제174조(특례의 인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 나 도의 행정·재정운영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수 있다.
제174조(특례의 인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 나 도의 행정·재정운영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수 있다.
제174조(특례의 인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 나 도의 행정·재정운영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수 있다.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